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2.10.5(금) 10:00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 1. 제안자 : 고령군수

## 2. 제안이유

-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미송산 자연휴양림 운영 목적(안 제3조)
- 미송산 자연휴양림 이용 통제 및 행위 제한(안 제3조~안 제4조)
- 미송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안 제5조)
- 미송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안 제7조)
- 미송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위탁관리(안 제11조)

## 4.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의 적용범위,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 •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휴양림의 이용통제 사항과,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금지 등 이용자들의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 에서는

휴양림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금액 책정, 시설사용자의 예약 및 해약, 시설물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에서는

휴양림 운영의 수입금 처리 규정과 휴양림의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미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자연휴양림 숙박동수 5동 7실의 운영만으로는 정상적인 수익창출과 민간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송산 자연휴양림의 운영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자연휴양림과 인근 산촌 마을을 연계하여 관광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